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세대 모두 이동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주 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세대 구성 <input type="checkbox"/> 다른 세대로 편입 <input type="checkbox"/>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 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 입 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 사유 (※주된1가지)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input type="checkbox"/>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교통, 문화, 편의 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제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을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을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을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자(재등록자)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이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을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을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쓰레기봉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입 축하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입자 현황	전입일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 주 소 전 입 주 소	비고 전입 대표자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제한안내 : 주민등록초본확인 결과 3년 이내 남원시로 재전입한 사람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지원가능 적격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입 장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이력 유)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하단에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대상자(동의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인
본인	[Yellow]	[Yellow]	[Yellow]	[Yellow]

입사원서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든학생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표를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학번			주소			
성명	성별 (남.여)		보호자	(부):		전화:
결핵검사				여 / 부	(모):	
생년월일	.	.	출신증		전공	

본인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2]

서약서

소속 : 학년 반 번
성명 :

(남,여)

본인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 허락을 받을(받은) 자로 학사 생활에 있어 기숙사 관리 규정과 별도 정한 바에 따른 학사 수칙을 엄수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기숙사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퇴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기숙사는 월 단위를 퇴사할 수 있으며, 월중에 퇴사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퇴사자나, 입원, 전학, 숙려기간, 3학년인 경우 수능이후 기숙사를 중도 퇴사 시는 환불 가능합니다. 년 월 일

학생 : (인)
학부모 : (인)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장 귀하